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황인창 연구위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IASB는 당초 IFRS 17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2017년 5월) 후 약 3.5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였지만,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함. 국내 보험회사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IFRS 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17 개정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는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¹⁾

- IFRS 17 시행 시기는 당초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또한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함

- IASB는 시행일 등을 포함한 IFRS 17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유용성, 기준서 시행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함

- 기준서 개정이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저하시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 됨
- 그리고 기준서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시행일의 과도한 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됨

1) IFRS Foundation(2018. 11), “IASB to propose one-year deferral of insurance contracts Standard”

■ IASB는 당초 IFRS 17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2017년 5월)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결정하였음

- IASB는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IFRS 적용국이 새로운 기준을 법률 제도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준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지침(Guidance)을 바탕으로 함
 - 일반적으로 기준서 공표와 시행일은 적어도 12개월~18개월 차이가 남
- IFRS 17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기준서 적용과 관련한 운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시행일은 늦출수록 기존 회계기준인 IFRS 4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회계관행이 지속됨
- 위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와 시행일 간 차이를 약 3년 6개월로 결정함
 - 시행일 1년전에 작성하는 비교재무제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준비기간은 약 2년 6개월임
- 다만 IASB는 기준서 시행일 결정과 관련하여 기준서 시행이 보험회사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 새로운 기준서 적용 시 부채가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 IFRS 17 시행일이 늦을수록 보험회사가 규제 자본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IFRS 기준서는 보험회사 규제 자본과 목적이 상이함

■ 기준서 시행일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였으나,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²⁾

- IFRS 17 시행 준비기간 중 일부 보험회사들은 인적자원 부족, 정보이용자 이해 부족, EU의 기준서 채택 지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당초 예정된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시행일을 1, 2, 또는 3년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계리, IT 시스템 전문가 등 IFRS 17을 준비하기 위한 내, 외부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IFRS 17 시행에 따른 변화를 알리고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보험회사 통제를 벗어난 교육, 감독, 세제 등 그 외 요소들이 완성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EU에서의 IFRS 17 기준서 채택 과정이 예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IFRS 적용국의 보험회사들이 IFRS 17 시행을 각자 다른 시점에 할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일부 보험회사들은 당초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여 시행일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일 연기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함
 - 특히 시행일을 길게 연기시키면 이미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방해하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준서 공표 이후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IFRS 17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2) IFRS Staff Paper(2018. 11), "Implications of exploring amendments to IFRS 17 for effective dates"

- IASB 스텝(Staff)은 최초 IFRS 17 시행일을 결정할 때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 준비기간을 부여하였고, IFRS 17 시행을 성실히 준비한 보험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서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IFRS 17 시행 준비기간 중 보험회사들은 IFRS 17 적용상 발생하는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검토를 요청함
- 기준서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IFRS 17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지만,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기준서 개정 여부 판단기준)에서 시행일 연기를 1년으로 제한함
- 향후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관련 절차에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상반기까지 IFRS 17 적용 이슈에 대해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개정사항이 결정되면 공개초안을 발표할 것이며 외부 의견수렴 등 정식 절차를 거쳐 IFRS 17 개정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IFRS 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함**

- 국내 보험회사들도 IFRS 17 시행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IFRS 17 적용 범위, 재보험, 보험계약마진 상각 단위, 수정소급법 등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한편 IFRS 17 시행 시 누적된 저금리 효과로 인해 자본이 급감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자본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우려됨

〈그림 1〉 국채 10년 금리 추이

(단위: %)



-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17 개정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IFRS 17 시행 연기만으로는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 [kiri](#)